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집토스

정 보 공 개 서

(주)집토스부동산중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집토스부동산중개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14, 지하1층 제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70-8028-730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04-204-787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영업팀 070-8028-730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II. 가맹본부의 [집토스]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집토스 부동산중개	집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14, 지하1층 제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7.18.	2018.07.30.	이재운	070-8028-7303	0504-204-7877
	법인등록번호	110111-6815918	사업자등록번호	887-86-0124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재운	집토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14, 지하1층 제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재운	070-8028-7303	0504-204-787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집토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집토스	—
상호	집토스부동산중개 ○○점	—
상표(서비스표)	집 토 스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352800호 등록일자 : 2016. 03. 17.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80,333	187,803	92,530	1,015,616	62,623	60,508
2022년	408,638	193,437	215,200	1,434,529	79,119	67,363
2023년	257,452	81,463	175,989	956,789	-43,616	-39,21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2022년 이전에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도의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상기 매출액에는 직영점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 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재윤	사내이사	2021. 06. 01. ~ 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	------	------	-------------	-----	------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신청자)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집토스	서비스표	2015.09.15. 출원 2016.03.17. 등록	출원 제41-2015-0044054호	이재윤	2026.03.17. (2026.03.17.)
			등록 제41-0352800호		
	서비스표	2018.11.06. 출원 2019.05.31. 등록	출원 제40-2018-0153181호	이재윤	2029.05.31. (2026.03.17.)
			등록 제40-1484114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위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소유자 이재윤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가맹본부의 [집토스] 가맹사업 현황

1. [집토스]를 시작한 날: 2023년 5월 22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8년 7월 26일[개설등록증 발급일])

2. [집토스]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집토스 부동산중개	집토스	이재윤	2023. 5. 23.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14, 지하1층 제1호

3. [집토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집토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비스	부동산 중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집토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7	—	7	6	—	6	8	7	1
서울	7	—	7	6	—	6	8	7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집토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7	—	—	—	7

6. [집토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집토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매출액은 해당 기간 각 가맹점이 당사가 제공하는 자체 업무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총액을 그 근거로 하며, 이는 해당 가맹점의 실제 전체 매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중 개점한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영업 기간 중의 매출을 1년분으로 환산한 것으로, 시기에 따른 매출 증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는 위 평균 매출액의 산정에 사용된 근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서면을 통하여 당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집토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집토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	7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집토스] 가맹점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집토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535	11,535	—	
광고 및 판촉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기관 및 예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기업디지털사업섹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1599-1114 (에스크로 대표전화)

귀하는 당사의 소정 서식을 작성한 뒤 위 예치기관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가맹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하나에스크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맹점사업자 에스크로 가입을 진행한 뒤, 가맹금 입금계좌 번호로 가맹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자세한 가맹금 예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계약 체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에스크로 사전등록 요청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사전등록
가맹점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가맹점사업자의 하나에스크로 ID와 임시비밀번호 발급
4. 가맹점사업자 회원가입
 - 가맹점사업자는 하나에스크로 웹사이트(<https://www.hanaescrow.com>)의 “하나에스크로 메인” → “프랜차이즈 로그인” 메뉴 접속 후, 로그인 페이지에서 상단의 “프랜차이즈 전용 ID 로그인” 선택 후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
 - 재로그인 뒤 약관 동의 및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을 진행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가맹점사업자 에스크로 가입 완료
5. 가맹점사업자 가맹금 입금
지정 입금 계좌로 가맹금 입금

귀하는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 발생으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전항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III.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집토스]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개설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의 대가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없음 (신규가입 시)	—	—	—
	개점 전 교육비	1,100 (양수 시)	양수일	교육 이후 반환 불가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비과세)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의무계약기간 내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가맹점 양수자인 경우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상기 내역과 같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10,500	6,100
가맹비	5,500	—
교육비	—	1,100
계약이행 보증금(부가가치세 비과세)	5,000	5,000

※ 가맹점사업자는 위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2,200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4,400
계약체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6,000~35,000	300~1,750	—	—	약 66m ² (20평) 기준
필수 설비 (정착물)	미지정	1,000~5,000	50~25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가맹점사업자의 자율로 업체를 선정하되, 시안 등 본사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인테리어 (점포 내장)	미지정	5,000~30,000	250~1,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사인(간판)	미지정	1,000~3,000	—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홍보판촉물	미지정	500~1,000	—	—	—	

※ 자세한 비용은 계약 체결 시 점포 실측 후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위 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개설 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초도물품 외 장비와 집기 등은 필요시 귀하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가맹희망자 협의: 당사 가맹사업팀 (070-8028-7303)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해당 입지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점포는 지상 1~3층(지층인 경우 내부 계단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할 경우에만 허용)에 소재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 구역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 「공인중개사법」 상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20세 이상인 자
소속공인중개사	당사 교육과정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20세 이상인 자
중개보조원	당사 교육과정 이수	직무교육 수료자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20세 이상인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집토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금전 지급방법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 회비	가맹본부	월 20만 원	익월 15일	없음	없음	—
프랜차이즈 유지수수료 (정기 로열티)	가맹본부	현금 매출액의 5% + 카드결제 매출액의 4% (최대 500만 원)	익월 15일	없음	없음	—
직원별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협력업체	가맹점 소속 직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하 같음) 1인당 월 10만 원	익월 15일	없음	없음	소속 직원의 월중 고용 혹은 고용 종료의 경우 일할 산정
신입 직원 교육비	협력업체	인당 40만 원 단, 가맹점 소속 직원이 6인 이하인 경우 무료	개별 청구	없음	소멸성 비용으로 교육 실시 이후 반환 불가	—
개점 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	개별 청구	없음	소멸성 비용으로 교육 실시 이후 반환 불가	—
점포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실비 중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금액	개별 청구	없음	실비로 점포 환경 개선 이후 반환 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	—	—	금전 지급의무 불이행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합니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	----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기간 중 공급하는 필수 품목과 관련하여 별도의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업무와 회계 등을 포함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감독 시기는 가맹점과 당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매출, 회계 관련 자료(POS, ERP시스템 및 회계장부 등)를 성실히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내역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또는 재계약을 포함합니다)하거나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에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비소멸성 부분에 한하여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특허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소유권(사용권) 변경·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귀하가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귀하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에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에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와 당사가 맺은 [집토스]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귀하에 부여된 가맹점운영권이 당연히 만료되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상호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것이 사용된 간판 등 시설·표시물을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집토스]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 서류와 운영 매뉴얼, 영업용 자산(부동산 및 매물 관련 정보, 고객 관련 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집토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자세한 내역은 계약 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점 이후 추가로 해당 품목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 표에서 나타난 거래 형태(강제·권장)에 따라 물품을 구입·임차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서 강제로 지정하는 품목을 지정된 거래 상대가 아닌 자를 통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귀하의 동의를 얻어 위 표의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기재에 따릅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집토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당사가 지정하는 거래 상대를 통하여 공급받도록 강제·권장하는 대가로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부동산 중개	왼쪽에 기재된 것 이외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을 통한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부동산 관리 대행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건축물 분양 대행			
그 외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업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되지 않은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위 표의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기재에 따릅니다.

2) 거래 상대(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 상대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 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부동산 중개 용역	미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고지 혹은 서면	법정 상한 내에서 지정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집토스	집토스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거리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

3)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해당 상권 인근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 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합의 후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집토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69.3%	30.7%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집토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집토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제39조제1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프랜차이즈 유지 수수료 등 당사에 대한 금전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정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가맹본부의 브랜드 또는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경고를 받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밀 및 영업용 유무형 자산을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고객정보를 고객과의 계약 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 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5.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와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6.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7. 점포의 규모와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8.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9.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당사의 변경된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12.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점포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경우 13.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4.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각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제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40조제1항 후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각호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교육비 11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업자 간 대표를 변경하는 등 영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교육비 110만 원)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营业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집토스]와 동일한 업종의營業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 이후 1년 동안 가맹점이 계약기간 동안 소재한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안에서 경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집토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00~18:00	최소 영업일 주5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營業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營業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 및 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규모에 따라	직접 근무	없음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의 업무개시 전 고용인의 신고 필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중개 소프트웨어	[집토스] 중개 소프트웨어 작성 성실도	수시	가맹영업팀	—
친절도	계약서 작성 후 고객 만족도	분기별 3회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검토	수시		—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반기별 1회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집토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지 않으며,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인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영업비밀 보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인 중도해지 또는 영업중단, 불법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 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제30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제43조제2항 각호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금 금오백만원(W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금 금오백만원(W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물정보와 고객정보, 중개 교육 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금 금오천만원(W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 시 가맹계약 제40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이십만원(W200,000)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제3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제4항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개설 승인	1일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실측 및 투자비 산출	3일	
도면작성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9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15일	
교육 실시	-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 - 점포 운영 교육	5~10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상기 일정은 개별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전화: 1588-1490, 웹사이트: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귀하가 관할법원에 대하여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 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기타비용은 협의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게 귀하 자신의 점포에 대한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귀하에게 경영지도 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 또는 알선은 하지 않으나 귀하가 원하는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경영지원	가맹점 개설 시 조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전 요청 시	가맹계약기간	세무, 대출 상담서비스 제공	-
경영지원	매출 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영업일 기준 2일 전 사전 요청 시	가맹계약기간	부동산 중개 계약서 검토	-

VIII.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집토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가맹점사업자 대상 교육	영업 중 인지해야 할 사항 부동산 중개 매물 관리법 부동산 중개 마인드 교육 본사 규정 및 방향 등	개별 또는 집단 강의 이론 및 실습교육	가맹점 계약 후 60일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집토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 및 귀하 소속 종업원에게 전수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개점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입 직원 교육	영업 중 인지해야 할 사항 부동산 중개 매물 관리법 부동산 중개 마인드 교육 본사 규정 및 방향 등	개별 또는 집단 강의 이론 및 실습교육	개별협의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신 영업방식 개발 점주 집체교육 필요 시 등	개별 또는 집단 강의 이론 및 실습교육	개별협의	필요 시 실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집토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신규 가맹점사업자 대상 교육	10일	무료 (단,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100만 원)	최초 계약시 이수
신입 직원 교육	협의	40만 원 (단, 가맹점 소속 직원 6인 이하인 경우 무료)	필요 시 실시 단, 신입 직원의 경력 유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경력직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
수시교육	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교육	협의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필요 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입 직원 교육은 가맹점사업자 소속 직원(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남	강남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8길 14, 지하1층제1호

상기 직영점 중 강남점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5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재 무 상 태 표

제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손익계산서

제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4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